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2. 24.(수) 10:05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5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5차, 제6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6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에는 <의결안건> 1건과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안) 등에 관한 건 (2021-07-026)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안) 등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방안 등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방안(안)」 및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을 붙임 1, 2와 같이 의결한다. 제안이유는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정책방안 및 심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경과는 2004년 舊 방송위가 공동체라디오 시범사업자 선정을 의결하고, 이듬해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개국했으며, 2006년에 공동체라디오방송 도입 근거 규정이 방송법에 마련되었고, 2009년 8월에 공동체라디오 7개사가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방통위는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허가유효기간 확대, 무선종사자 기준완화,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주파수 출력증강을 위한 변경허가 등을 시행하였고, 작년 8월에는 공동체라디오 신규 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예비수요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정책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자 허가 필요성입니다. 첫째, 공동체라디오방송 인지도 제고 및 저변 확대 필요성입니다. 2009년 최초 허가한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 이외에 현재 까지 신규사업자 선정이 없었고,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낮은 출력 등으로 인해 청취 환경이 좋지 않아, 방송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운영주체이며, 협소한 방송

권역으로 광고·협찬금 등 재정수입이 저조하여 기부금, 회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9년 기준 7개 방송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약 2억원으로 영세한 상황입니다. 이에 사업자 규모를 확대하여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지역 주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의 상업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지역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미디어 육성 필요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무료로 이용 가능한 라디오는 지역소외현상 해소 및 사회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향상을 위한 매체로서 적합하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공동체라디오는 시의성 있는 지역정보를 전달하고 주민들의 유대 형성을 통해 재난상황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의 방송접근권 확대입니다. 지역별 미디어센터 건립 및 마을미디어 지원 등으로 인해 시청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미디어 활용 능력이 높아지면서 미디어 접근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미디어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과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마을미디어단체들이 콘텐츠 제작 및 접근의 용이성으로 인해 라디오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방송제작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시청자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선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자 허가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정책 목표는 첫째,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사업자 규모를 확대하고 인지도 제고 및 저변 확대를 통해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지역매체 활성화로 청취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다양성을 제고하며, 셋째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공론의 장을 활성화하고, 취약계층 사회 통합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책 추진방향은 희망 수요, 가용주파수 상황, 지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사업자 허가를 추진하고,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신규사업자 선정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자 허가 개요입니다. 허가대상 방송사업은 방송법 제9조제11항에 따른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이며, 방송사업자 수는 허가 사업자 수는 특정하지 않고 가용주파수 상황과 지역적 필요성을 고려해 적격사업자에 허가권을 부여하며, 방송권역은 시·군·구 행정구역 단위 허가를 원칙으로 하되, 주파수 환경과 지역·문화·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FM대역, 허가 출력은 10W 이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고, 신청 주체는 비영리법인이며, 설립 예정 법인도 가능합니다. 재원은 사업자 자체조달(자율 경영) 원칙이며, 기부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방송광고수익금, 협찬고지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합니다. 방송 편성은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60% 이상을 허가받은 주된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며, 음악, 문화, 지역 관련 소식 등 정보 제공이 주된 방송 분야이며,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편성이 금지됩니다. 심사 기본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은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고, 소규모 비영리 방송인 공동체라디오방송에 특화된 사업계획과 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 계획, 지역적 필요성 등을 중점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구성 절차, 운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은 심사항목의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심사 항목별 배점안은 9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하는 경우 허가를 의결하며, 650점 이상을 획득하

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하며, 신규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3월 초에 신규사업자 허가 신청 공고를 내고, 4월 말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이후 과기정통부 기술심사와 신규 허가신청서 검토 등을 하여 6월 중으로는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정책 방안(안) 1부,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계획(안) 1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엇그제 보고받았을 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라디오방송이니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예. 사업자들이 인터넷의 팟캐스트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와 상관 없이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별도의 라디오 없이 요즘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우선 인지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으로는 이것이 공동체라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체라디오의 이름, 브랜드를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요즘 시대에 맞게 하나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왕에 협회가 있다니까 이번에 새로 신청을 받으면서 협회에서 브랜드 공모 같은 것을 한 번 해서 그런 것으로 국민들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서울버스가 '타요'라는 브랜드로 디자인과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또 EBS에서 '뽕수'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는데 공동체라디오도 결국은 그런 형식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근래 SNS 가운데 <클럽하우스>라는 형식이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스마트폰을 켜 놓고 남들이 서로 나누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근래 라디오 부활의 조짐이 있는 것과 SNS의 <클럽하우스>의 폭발적인 성장과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라디오를 매체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시 한번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까 시의적절한 모집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보면 수신범위가 5km 정도인 10W 이내의 낮은 출력으로

하면 결국은 기초단체 또는 동네 단위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런 매체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눈독을 들이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여기 보면 '보도는 금지된다'고 하는데 보도의 개념이 도대체 무엇인지, 가령 어떤 곳에서 구청장이나 군수, 시장 같은 사람이 그날 장에 와서 우리 동네일을 위해서 뭔가 행사를 했다면 그것이 보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요즘 기초단체장이 전부 다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선출직의 경우는 동정에 관한 라디오방송이 보도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뭔가 확실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 두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공동체라디오가 순수한 뜻에도 불구하고 뭔가 정파적 이해 관계에 휩쓸릴 틈바구니가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학계나 이런 쪽에 우리 방통위의 의견을 확실하게 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고, 만약 그 기준을 어겼을 때 확실한 패널티가 있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것이 아주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한 것을 보면 대개 지자체들과 지역 활동가들에게 한정되어 있는데, 조금 널리 알려져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도 이런 매체를 활용해서 재래시장 운영이나 시장 연합회가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쪽에 연관이 있는 협회나 아니면 이런 곳과도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간단히 답변하시겠습니까?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위원님 말씀해 주신 3가지 사항을 저희가 허가 심사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하고, 혹시 미진한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보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은 심사 과정에 거기까지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때까지 안 된다면 위원회 내에서 다시 논의해 주셔서 가이드 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허가 조건이나 협약서 등을 통해 향후 보도를 하지 않는, 준칙을 지키는 의지들은 확실히 담보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분 말씀해 주시지요.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2009년 방통위가 7개 공동체라디오사업자에게 정식 허가를 내준 뒤 이번에 12년 만에 추진하는 신규허가 사업입니다. 공동체라디오는 지역민들이 직접 제작과 운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 형성과 유대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지역의 공론장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의 7개사 모두 코로나19 대응 방송을 하고 있듯이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재난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처럼 공동체라디오가 지역 밀착형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종사자들과 또 지역민들의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방통위가 2018년도부터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결과, 작년 8월에 진행된 예비조사에서 36개 단체가 신청의사를 밝힐 정도로 그 수요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사무처에서는 오늘 의결한 기본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허가 심사를 진행해 주시되, 신규사업자가 사업 초기 콘텐츠 제작이나 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신청단체가 공동체라디오사업을 안정적으로 또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라디오는 공영도 민영도 아닌 우리 주위의 일반 시민들이 운영하는 제3의 대안 미디어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자 취약계층, 소수자를 위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과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최초 허가받은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외에 그동안 신규사업자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 정책방안이 나온 것은 더욱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결하는 신규허가 정책방안이 단순히 공동체라디오의 양적 증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미디어로서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효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동체라디오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점에 착안해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원하고, 또 계속 우리가 지켜봐 주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협회와 우리와 협조 관계는 잘 되고 있지요?

○ **김우석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이번 신규사업자 허가 과정을 통해 협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 최근 1년간 매우 긴밀하게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결국 방안이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도를 높이고 또 위상을 높이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역시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공동체라디오 신규허가 정책방안에 관한 건에 대해 원안에 동의하면서 지역공동체의 생생한 현황과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데에 많이 공헌했다는 점은 공통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방송을 제작해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재난 극복에도 기여했다는 점 또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대구성서공동체FM의 경우 2020년 2월 대구 확진자 발생 시 주 3회 특별생방송을 실시해서 공적마스크 대기 줄 현황과 가짜뉴스 검증, 자영업자를 위한 식자재 등을 방송했다는 점이 지역공동체에 많은 도움을 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에 공모절차를 밟는데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보다 협회와 더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서 개선점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밀착형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와 홍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유했으면 합니다. 특히 공동체라디오사업자들이 아무래도 운영에 있어서 경영계획이 안정적이지 못한 어려움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에 동의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역시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너무 늦었지요. 2009년도 개국 이후 공익적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저변을 확대하고 사업자 수를 늘리고 자리 잡도록 하는데 저희 방통위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매체 특성을 고려한 인지도 제고 그리고 사업자의 지역 정착 방안 등에 대해 끊임없이 점검하고 우리들이 도움을 줄 것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서 공동체라디오가 하나하나 지역에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방통위가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최근 비대면 사회의 일상화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특히 동영상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또는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불공정 문제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통위가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와 언론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의 정책 변경 시 안내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8.3%였고, 부적절은 81.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삭제, 광고 중단 등 안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73.3%, 플랫폼 서비스 종료 시 크리에이터 창작물 보호 필요가 96.7%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추진 경과입니다. 저희는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작년 3월~12월까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반을 운영했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반은 방송통신 분야 학계·시민단체 및 법조계 등 자문위원 총 1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6월까지 크리에이터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와 의견청취를 수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7일~10월 31일까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리에이터 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크리에이터 총 300명이었는데 구독자 1,000명 이상인 MCN 소속 150명, 독립 크리에이터 15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14일 실무적으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1월 7일~19일까지 이해관계자, 즉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MCN 및 크리에이터에 대해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동영상 콘텐츠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통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플랫폼 이용자의 보호에 이바지함입니다. 계약의 공정성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고, 계약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입니다. 콘텐츠의 일시적인 중지나 차단, 삭제 시 사전에 알려야 하고, 콘텐츠 추천 시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수익 정산의 명확화입니다. 수익이나 비용의 정산 기준을 사전에 문서로서 정하고,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 등 보호입니다. 콘텐츠의 권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고, 2차적 저작물의 작성 등에 관한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입니다. 아동·청소년 크리에이터에게 부당하게 대금 지급을 지연·거부하거나 차별적인 계약 조건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이용자 보호입니다. 부당·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하며, 서비스를 중단 또는 종료하는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 처리에 대한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원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상생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영상 콘텐츠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되, 거래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여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의 상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보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피해 예방과 이용자 보호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금일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2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3월 25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은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한 전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크리에이터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보면 크리에이터가 약자지요?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고 또 다른 전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하는 일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것 때문에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 언론들이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자꾸만 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디에서 누가 해야 할지에 관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히 방송과 통신과 관련해서는 그들을 규율해야 하는 전문기관인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이라는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언론에 알릴 때도 이것이 단순한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관한 점을 분명하게 해 주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와의 경쟁관계에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짧게 답변드리면 이 가이드라인 자체는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플랫폼 사업자 공히 적용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건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와 관련해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소관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나 저희가 관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에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 자체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에서 가이드라인 마련하는데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공정위의 정부안이 있고, 그다음에 과방위 쪽에서는 전혜숙 의원님의 법안이 있기는 한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 안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계약서 규제와 또 불공정거래 행위 중 일부, 예를 들어 거래상 지위 남용만을 규율하고 있는 데, 즉 B2B만을 규제하다 보니까 플랫폼 산업의 전반을 규율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숙 의원님 안은 이용사업자와 플랫폼 및 이용자 간 다면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은 일단 전해숙 의원님 안에서 보면 다면적 거래관계 속에서 동영상 콘텐츠 유통만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도 증대하고 동영상 콘텐츠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재 규제 자체나 법적 제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 안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전기통신사업법은 애초 입법 취지가 주로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내용이 촘촘하게 구성되었다는 평가는 받았는데, 그렇지만 새롭게 영역이 확장되면서 신종 글로벌 사업자로 부각되고 있는 네이버나 구글처럼 이런 부가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빈약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근년에 들어와서야 부가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이지만 방통위는 기술적 조치나 요금신고 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서비스 안정성 확보, 국내 대리인 지정 이런 규제를 신설해서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는 형편인데 그만큼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 논의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방통위가 다시 한 번 부가 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전문 규제임을 보여준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법 제정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해서 방통위는 그동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운영해 왔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또 MCN 그리고 크리에이터 대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방송통신 분야 학계·시민단체 및 법조계 자문위원들과도 충분한 의견수렴과 여론조사를 거쳐 여러 가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범안을 도출해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 제정은 그동안 본 위원회의 노력의 산물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만 국회에서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논의 중인 상황에서 방통위가 ICT 전문 규제기관임을 보여줄 수 있는 실질적 플랫폼 규제 및 상생 내용이기기는 하지만 다시 부처 간 다투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미디어에서 방통위와 공정위의 밥그릇 다툼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국민께 심히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디어에도 밥그릇 싸움이라고 비판하더라도 과연 크리에이터나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제대로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나아가 국민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든 균형 있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국회 과방위에서 논의 중인 의원 법안은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 간 다면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유형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체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공정위 법안은 B2B만을 규제하기 때문에 플랫폼 산업 전반을 규율하지 못해서 이용자나 크리에이터 보호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크리에이터나 또 수많은 이용자로 보호하는 법안이 필요한데 공정위 일반 법안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의 양면적 성격인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MCN이지요. 가이드라인에 포함시켜서 MCN의 크리에이터에 대한 계약의 공정성, 또 부당한 차별 금지, 저작권 보호,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의무 등을 규정해 놓고 있어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 간의 상생과 크리에이터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저는 이처럼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터는 물론이고 이용자와 궁극적으로 국민 권익을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전문기관인 본 위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에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최근 전례 없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산업의 구성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또 불공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고려할 때 상생을 위한 새로운 규제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에 해당 분야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음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ICT 전문 규제 부처로서 산업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의 진흥 또한 함께 고려해서 규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또한 이를 고려해서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상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사무처 보고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오늘 본 가이드라인이 우선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등 동영상 콘텐츠 유통 환경에서 각 행위자를 정의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둘러싸고 등장한 이슈를 정리하고 원칙을 세운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계약 유통, 수익 정산, 저작권 등으로 단계별·분야별로 구분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MCN 사업자, 크리에이터 관계에 대해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에 대해서는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민원 대응 체계 마련 의무 등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서 구체성을 더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영상 콘텐츠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는 상황에서 각각 개별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ICT 전담기관으로서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및 규제 전문성 등을 활용해서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고내용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언론과도 이야기하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규제 필요성이 인정이 되느냐, 규제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제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권고를 하거나 자율 규제를 유도해야 할 내용을 법에 집어넣어서 강제규정으로 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도 기본적으로는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행정지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이는데 저희들이 법률의 미비라기보다는 그동안 규제를 자제해 왔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단 시작으로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은 나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 중에 시정이 안 되거나 심각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다른 좀 더 강한 규제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곳에서 특히 언론에서 이 문제를 부처 간 다툼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바람직한 시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부처가 효과적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한 그리고 사업자들의 신규 산업의 진흥 그리고 이용자 보호, 약자 보호 이런 부분을 위한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펴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로 인해 중복규제가 생긴다거나 과잉 규제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면 그것은 문제겠지만 관련 업무를 진행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과정,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중복규제나 과잉규제 문제점들을 해소해 나간다면 보다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왜 지금 이런 가이드라인 방식의 규제가 필요한지, 또는 왜 법령과 형식의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생각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규제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잉 금지 원칙, 규제가 과도해서 산업의 진흥을 가로막는다거나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점들을 항상 모든 업무에 있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소관 부처의 문제로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ICT 전문 규제기관으로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간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국내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혹여 이런 새로운 규제책들이 해외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후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점검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나. '19년도 상·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나> “'19년도 상·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보고서유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19년도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를 보고 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경과입니다.

'20년 4월 '19년도 방송실시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20년 8월 '19년도 상·하반기 순수외주제작 검증대상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 10월 방송사가 제출한 순수외주제작 증빙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11월 「순수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1년 1월 초 1차 인정결과를 통보하였으며, 1월 말 방송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한 이후 지금 최종 인정 결과(안)를 확정하였습니다. <3> 관련 규정입니다. 방송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는 방송사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편성비율은 고시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지상파방송 사업자 및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사별 의무편성비율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고시 제9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순수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며, 주요 내용은 아래의 글 상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편성고시 제9조의2 제5항에 따라 「순수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4> 2019년도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개요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송법 제72조에 따른 방송사의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9년 상·하반기에 방영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중 외주제작 관련 협회가 가장(假裝) 외주제작물로 선정하거나 외주인정지원단에서 선정한 방송 프로그램을 점검대상으로 하였으며, 외주제작 관련 협회, 학계, 법조계로 구성된 순수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성고시 상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부합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4쪽 <5> 점검 결과입니다. KBS1 '전국 이장회의', MBC '문화사색', SBS '수목드라마 빅이슈', JTBC '알짜왕' 등 30개 프로그램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하고,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서, 외주제작사·제작인력 간 계약서 등 자료를 검토하여 순수외주제작물 인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순수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력계약서를 미제출한 프로그램 6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 5건 등 총 11개의 프로그램을 1차로 불인정하였으나, 1차 인정결과 통보 후 불인정된 11건 중 MBC, TV조선 관련 3건에 대해 방송사가 이의신청을 접수함에 따라 인력계약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고 불인정 사유가 해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총 30개의 검증대상 프로그램 중 22개 프로그램이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8개 프로그램이 불인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인정 결과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안건을 접수해 주시면 방송통신사무소 및 방송사에 순수외주제작 인정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붙임 1>에 보면 '전국 이장회의'는 인력계약서를 미제출했는데 이의신청도 없고 인력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이것은 방송사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이 아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아닌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외주제작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리고 KBS 2TV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MBN은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것인데, 그러면 그것은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이라고 신고했다는 것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하나도 인정이 안 되고 특수관계자가 한 것이 맞다면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기존에 제출한 방송 실시 결과의 순수외주제작비율이 불인정된 프로그램에 따라 하락하게 됩니다.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나중에 재승인 심사 과정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MBN은 이렇게 해서 몇 퍼센트가 몇 퍼센트로 됐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순수외주제작물 인정결과를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방송통신사무소에 통보한 후 방송통신 사무소에서 정확한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무처에서 대략적으로 그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산정비율이 나온 다음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주로 보니까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것과 인력계약서가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김효재 위원님께서 재허가·재승인을 말씀하셨는데 '19년도 외주 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검증하면 2020년에 이미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반영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19년도에 실시했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20년도에...

○ 김 현 부위원장

- 이미 재허가·재승인은 2019년도까지 정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 김 현 부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반영될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이슈는 다른데 재허가 기간 동안에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허가 기간상에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연구반을 운영해서 결과치가 나오는데 이미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작년 것을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상·하반기로 할 것인지, 외주제작 문제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때문에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가지고 외주제작자들이 피해도 컸던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운영의 속도로는 바로 잡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으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석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개선책에 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 상·하반기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결과,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외주에서 제작했다고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면 인정자문위원회에서 순수외주제작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결과들이 방송통신사무소에 넘어가서 쌓여서 최종적으로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판단되고, 그러면 '19년도 것이 '21년도 와서 인정여부가 이제 판단이 되면 순수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 지금부터 언제 결론이 날지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되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해 연도에 해야 하고, 당해 연도에 안 된다면 예를 들어 '19년도 것이면 '20년도 상반기에 마무리를 지어서 바로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2019년도 것을 지금 올린 것이 다소 늦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처리 때문에 늦었는데, 이것 자체가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인정자문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이의제기를 받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소요된 측면이 있어서 다소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제도개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기한을 정확하게 정하고 언제까지 제출하고 이의신청도 언제까지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승복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절차들을 분명히 규정해서 빨리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부위원장

- 추가로 사무처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보고를 받을 때 보면 긴급성을 요하거나 신속성을 요하는 사업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평가의 항목에 적용되는 것인데도 주요 경과를 보면 늘 상반기·하반기에 정리해야 할 것도 1년 내지는 2년이 걸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듯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 방통위가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하는 부처에서 법안을 제출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못 맞추고, 또 너무나 신중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 국민들의 눈높이, 그다음에 이용자들을 우선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고유권한으로 볼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주요 경과를 볼 때 30개를 대상으로 해서 걸러내고 걸러내는 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려서 처리가 된다는 것은 저로서는 아프다고 말씀드리면서 속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걸맞게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중섭 방송기반국장

-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지요.

○ 최성호 사무처장

-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시기의 문제, 속도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반적으로 맞추는 방안, 최대한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책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은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분은 좀 더 속도감 있게 정책을 발표하는 부분들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저희 조직의 인력에 한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처 전체가 노력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보고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외주제작사 10곳 가운데서 7곳이 작품 제작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송사들의 외주제작 물량 축소로 외주제작사들이 직격탄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방송사업자 또한 어려움이 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외주제작사와의 상생 협력을 통한 위기극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 제7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00분 폐회 】